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등급(등급/월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의료, 경감대상자 : 6%
- 의료, 경감대상자 :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30분 이상 : 16,630 원　　-60분 이상 : 24,120 원　　-90분 이상 : 32,510 원
-120분 이상 : 41,380 원　　-150분 이상 : 48,250 원　　-180분 이상 : 54,320 원
-210분 이상 : 60,530 원　　-240분 이상 : 66,770 원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량이용(차량 내) : 84,670원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원
- 차량 미 이용 : 47,670원

③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5분이상~30분 미만 : 40,76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 : 51,110원
- 60분 이상 : 61,490원

④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다만, 일요일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때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한다.

3)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